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시험(안 별표6)

- 안전성인증 시행에 따라 핵심장치등(구동축전지)의 안전성시험 방법을 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 044-201-5584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